

공정하고 탄력성 있는 요율제도의 정착을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화재보험과 가장 유사한 제도의 기원은 15세기말경 독일에서 시작된다. 조합원의 가옥이 소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공동부조와 조력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Guild가 그 유래이다. 그러나 근대적 화재보험의 시초는 1666년 런던 대화재가 일어난 이듬해인 1667년에 니콜라스 바본이라는 의사가 시작한 화재보험사업이다. 그후 1684년에는 우애조합이 출현했고, 1909년에 와서 영국에서 보험회사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7월에 최초로 화재, 해상 및 운송보험을 취급보험종목으로하는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현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설립, 동년 10월 1일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요율제도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산업시설이 극히 미미한 상태였고 보험업계의 제반사정이나 요율체계도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김영욱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부장〉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험산업 또한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양적성장을 밑받침할 수 있는 기술축적이 미진하였고 더욱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요율체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계약의 인수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1960년대초부터 대규모 공장이나 차관기업체 등에서 외국증권과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는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의 화재보

험요율체계는 협정요율과 비협정요율로 이원화되었으며 이들 상호간의 요율수준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내 협정요율의 조정 및 전면적인 요율체계의 개편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수십년간 화재보험요율체계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규정, 지역등지구분, 공업 및 작업공정, 일반통칙 등이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보완되었고 수차에 걸쳐 요율이 인하되었으나 협정요율과 비협정요율과의 이원화현상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자율화와 국제화에 대비한 우리 요율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전반적인 요율체계의 선진화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표1,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손해보험료의 성장에 비하여 화재보험의 성장률은 기업보험의 한계성에 기인한 성장률의 둔화는 물론 전체에 대한 구성비율의 감소를 시현하고 있을 뿐더러 영문

증권의 사용추이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약관면에서 영문증권의 담보내용에 일치하는 특약개발과 이에 관련한 요율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Deductible(기초공제) 특약 등의 개발연구를 통한 탄력성부여, Business Interruption(기업휴지보

험) 특약의 활성화, 기존특약의 Package 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문요율서의 지속적인 보완작업, 예를 들어 건물규정, 등지규정, 공장물건의 위험등급별·일반물건의 직업별 할인할증제도 보완, 사업비 배분방법의 조기정착실시, 요율검증제도의 정착을 통한 실적에 따른 정기적 요율수준변경, 대단위공장 등에 대한 merit제도의

도입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대규모 물건이나 고액계약자에 대한 우량계약자할인제도는 경직성있는 협정요율제의 단점을 보완함은 물론 요율의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국제경쟁력배양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일본의 화재보험 특정할인제도 <표4 참조>와 미국의 H.P.R(Highly Protected Risks) 보험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물건별로 일정이상의 보험금액, 구조급별, 경과년수, 손해율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계약자에게 소정의 할인요율을 산출하여 우량계약자에 대해 혜택을 줌은 물론 요율의 탄력성·경제성, 방재기능의 제고 등으로 공정한 요율관리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같은 몇가지 보완책을 조기에 실시, 정착화시키면 공정하고 탄력성있는 요율제도 확립과 아울러 화재보험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앞당겨짐은 물론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모두의 권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영문계약의 국문계약유도로 국영문요율의 이중구조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보험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국문계약으로 전환되는 보험가입자의 불만을 제거하여 요율의 급변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며, 획일적인 급별

<표1> 화재보험 성장 추이

(단위 : 천원, %)

연도별	손해보험료	전년대비 성장률	화재보험료	전년대비 성장률	손해보험 구성비
'83	762,051,699	-	72,389,055	-	9.5
'84	866,421,214	13.7	84,419,234	16.6	9.7
'85	1,013,595,470	17.0	95,153,870	12.7	9.4
'86	1,195,725,642	18.0	109,312,805	14.9	9.1
'87	1,534,258,360	28.3	133,625,581	22.2	8.7

註) 손해보험료에는 장기보험실적이 포함됨.

<표2> 87년 국·영문 계약실적 현황

(단위 : %) (단위 : 천원)

물건 구분	일 반	공 장	총 괄
국 문	27,229,944 (90.3)	54,901,792 (55.7)	86,949,025 (65.1)
영 문	2,936,262 (9.7)	43,740,294 (44.3)	46,676,556 (34.9)
합 계	30,166,206	98,642,086	133,625,581

註) 총괄에는 주택, 창고물건이 포함된 수치임.

<표3> 연도별 계약실적 추이

(단위 : %)

구분	물건 연도	일 반					공 장					총 괄				
		'83	'84	'85	'86	'87	'83	'84	'85	'86	'87	'83	'84	'85	'86	'87
국 문		89.0	90.5	90.9	91.4	90.3	64.1	58.9	59.6	61.0	55.7	71.5	68.6	68.8	69.9	65.1
영 문		11.0	9.5	9.1	8.6	9.7	35.9	41.1	40.4	39.0	44.3	28.5	31.4	31.2	30.1	34.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 화재보험 특정할인율 물건별 비교 (일본)

항목	건물종별	공 장 물 건			창 고 물 건	
	특정종별	일반물건특정	일 반	석유화학공장	전 기 사 업 자	창 고 물 건 특정
적 용 단 위	건 물 단 위	구 내 단 위	구 내 단 위	계 약 자 단 위	건 물 단 위	
자 적 조 건	보 험 금 액	15억원이상	2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	-
	구 조	특급 또는 1급	2급이상이 60%이상	-	-	특급 또는 1급
	경 과 년 수	-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업자로서 5년이상, 건물로서 1년이상
	손 해 율 (과거5개년)	건물단위...30%미만	계약자단위...40%미만 공장 단 위...40%미만	계약자단위...40%미만 공 장 단 위...40%미만	계약자단위...40%미만	계약자단위...40%미만
	기 타	-	-	석유화학제품 제조 설비가 동일구내의 작업시설의 총 보험금액에 대하여 50%이 상	-	영업규모로서 창고건물 5 동이상 점유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대상건물 750㎡ 이상
할 인 율	건물... 최고 25% 동산... 최고 15%	5~25%	2~15%	2~25%	3~20%	
할인율산출식		Z=X+Y (%) Z : 특정할인율 X : 공장할인율 Y : 계약자 할인율	$Z = 15 \times \frac{S}{1500} \times a$ (%) Z : 특정할인율 S : 득점합계 a : 수정계수	Z=X+Y (%) Z : 특정할인율 X : 기초할인율 Y : 부가할인율	Z = (X+Y) × a (%) Z : 특정할인율 X : 기초할인율 (3년유효) Y : 계약자할인율 a : 수정계수	
비 고	1. 공설소방서의 거리 2. 건물의 내장 3. 방화구획 4. 방화관리 (경비원) 5. 5년간의 손해율	(X%) 1. 공설소방서의 거리 2. 인적물건의 거리 3. 사설소화설비 4. 순회경비상황 5. 구조비 6. 위험구획의 수 7. Top Risk의 % (Y%) 계약단위의 보험료	1. 공설소방서의 거리 2. 인적물건의 거리 3. 사설소화설비 4. 안전관리 5. Risk의 분산 6. 공장단위의 보험료	(X%) 5년간의 손해율 (Y%) (Y=N+A) N : 전기적사고 담보특약 부 계약의 부보상황 A : 계약자 단위의 보험료	(X%) 1. 공설소방서 2. 인적물건의 거리 3. 사설소화설비 4. 동력·전력의 사용상황 5. 건물내에 있어서 작업 상황 6. 건물의 위험분리상황 (Y%) 계약자 단위의 보험료	

요율체계에서 탄력적인 체계로 전
화하여 국문요율의 신뢰도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율검
증의 과학화와 요율산출의 적정화
를 기함으로써 보험사업자에게 정
확한 보험원가를 제시해 보험인수
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보험가입자의 위험관리기
능의 제고를 통한 보험사고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정한

적용요율의 제시로 보험가입자의
이익도모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함께 객관적으로도 공정한
손해보험요율검증제도의 정착화를
통해 검증과 요율조정의 철저를 기
하고 동시에 실적손해율과 예정손
해율과의 접근으로 적정한 요율수
준의 유지가 가능하고 사업비 배분
방법의 정착을 통한 순보험료와 부
가보험료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경험통계의 확립과 보험원가산출
의 적정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같은 제반 개선
작업은 요율의 이중구조를 일원화
된 요율로 접근시킴으로써 요율의
해외의존도를 탈피, 보험계약자에
대한 요율의 형평원칙을 견지할 수
있고 아울러 보험가입자의 이익도
모 및 보험사업자의 경영효율화를
촉진시켜 줄 것으로 사료된다. ㉞